

창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가단1050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박희준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허선무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들과 망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9. 3. 13. 접수 제876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F은 망인의 며느리이다.

나. F은 2018. 4. 30. 망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근의 남해고속도로 남해 제1지선의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여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화물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원고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8. 5. 10. ‘경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8. 5. 21. ‘경추 5/6번 전방 경유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2019. 5. 30. ‘요추 4/5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 천추 1번 후외방 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사고일로부터 약 14개월이 지난 현재 하반신 마비, 오른팔 마비, 척추 장애 등으로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9. 3. 13.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C과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 9. 17. 망인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6395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1. 11. 10. ‘망인과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3,788,68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17.부터 2021.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22. 2. 2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망인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F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고, 기왕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의동승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사건 1심 승소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우선,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와 망인이 여행을 가기 위해 며느리인 F에게 운전을 시켰으므로 원고도 망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이 사건 자동차는 망인의

단독 소유였고, F은 망인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도 망인이 단독으로 가입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원고는 뒷좌석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여행에 동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동등한 정도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이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호의동승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의 기왕증과 기여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을 상대로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거나 고려해야 될 것일 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F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F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1인과 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1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받을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G조합, H은행, I조합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망인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금채권 : 32,972,426원 상당

② 부동산 : 밀양시 K 전 245㎡(시가 15,435,000원 상당), 밀양시 L 임야 132㎡(시가 1,135,200원 상당)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망인이 보유하게 된 적극재산은

49,542,626원(= 32,972,426원 + 15,435,000원 + 1,135,200원)만 남게 되는데, 앞서 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각 말소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C와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가 각 경료되어 피고들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봉수

별지